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1207

제출연월일 : 2010. 3. 23.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소득세 도입 등 세목체계가 개편되므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도입(안 제1절의 2 지방소득세)

- (소득과세 통합) 현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유사한 소득과세인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
- (균등과세 통합) 균등과세(Flat Tax)로서 성격이 유사한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편
- 재산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세목변경 → 현행 귀속체계 유지

나.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폐지(안 제2장5절 농업소득세. 제3장2절 사업소세 폐지)

-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세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 폐지
- 세목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 폐지

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유사 ·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과세전 적부심사,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을 통 · 폐합하고자 함 (안 제8조의 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세법 및 시행령」,「고성군세 조례」 등
- 2010지방세 조례개정 표준안(행정안전부)
- 경상남도 세정과-141(2010. 1. 5.) 조례개정 표준안

○ 예산조치 : 불필요

4. 본 문 :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세목)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1(지방세심의위원회) ①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6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부동산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1절(주민세)에 제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세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

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6,000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2. 법인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 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

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장에 제1절의 2(제22조의 3부터 제22조의 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 2 지방소득세

제22조의 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 2(주민세 비과세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2조의 4(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2조의 5(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1조의 2(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

제2장제5절(농업소득세-제41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3장제2절(사업소세-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목) ① (생 략)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②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세	1. 주민세
2. 재산세	2. 지방소득세
3. 자동차세	3. 재산세
4. 주행세	4. 자동차세
5. 농업소득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7. 도축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소세	<삭 제>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삭 제>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

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 1(지방세심의위원회)** ① 군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6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부동산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삭 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
<신 설>	제18조의 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 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6,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0,000원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6,000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 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신 설>	제21조의 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신 설>	제1절의 2 지방소득세
<신 설>	제22조의 3(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 2(주민세 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 4(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신 설>

제22조의 5(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1조의 2(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제5절 농업소득세

제41조(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 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의 납

세의무를 진다. ③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 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	<삭 제>	

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	<삭 제>	

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5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삭 제>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6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 세 표 준) (세 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72만원+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672만원+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초과 금액의 100분의 40	<삭 제>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삭 제>	
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삭 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 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군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삭 제>	

수 있다.	
제3장 목적세	제3장 목적세
제2절 사업소세	<삭 제>
제95조(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삭 제>
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삭 제>

제97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영 제2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삭 제>
제9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영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영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	<삭 제>

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99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	<삭 제>

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고성군세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	<삭 제>

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